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굴착기 선회반경 출입금지 장소 지정(안 제20조)

가. 개정 이유

- 굴착기는 사망사고 최다 발생 건설기계·장비로 주로 작업 중 근로자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례 다수 발생함에도 굴착기 작업 시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굴착기 관련 작업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굴착기 붐·암·버킷 등 선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장소 범위에 추가하여 출입금지 범위 명확화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굴착기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규칙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46조 등)

가. 개정 이유

- 최근 달비계*와 리프트** 종류를 재분류하는 내용으로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이 개정(‘21.11.19.) 됨에 따라,

* 달비계를 곤돌라형 달비계 또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 구분하고, 각각의 달비계에 필요한 부속 자재(와이어로프, 섬유로프 등) 성능기준을 같이 규정(안전보건규칙 제63조)

**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건설용 리프트로 안전인증·검사 용어로 일원화(안전보건규칙 제132조)

-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다른 조문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안전보건규칙 개정 사항(용어 및 인용 조문 등 변경) 반영*

* ① 제43조, 제154조: (현행) ‘건설작업용 리프트’ → (개정) ‘건설용 리프트’

② 제166조: (현행) ‘제62조제2항제9호’ → (개정) ‘제63조제1항제1호’

제168조: (현행) ‘제63조제2호’ → (개정) ‘제63조제1항제2호’

제169조: (현행) ‘제63조제3호’ → (개정) ‘제63조제2항제9호’

제210조: (현행) ‘제63조제1호’ → (개정) ‘제63조제1항제1호’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안전보건규칙 상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 현실화(안 제86조)

가. 개정 이유

- 이동식 크레인에 부착된 탑승 설비에서 근로자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'11.7월부터 이동식 크레인에 한해 탑승을 제한*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만 사용이 가능하나,

* (관련 규정) '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' (안전보건규칙 제86조제2항)

- 작업 공간 구조(굴뚝 내부 등), 높이(80m 이상) 등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
- 이에, 구조 등 긴급한 용도로 필요한 경우 일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탑승의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높은 장소에서 기중기 사용 시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해당 작업대를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등 탑승의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*

* KS B ISO 12480-1(크레인-안전한 사용, 부속서 C) 사람의 탑승은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, 추락방지 조치 및 사용 전 점검 등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고공 작업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4. 타워크레인 고정부품 규격 제한 통일(안 제142조)

가. 개정 이유

-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의 고정부품 규격 기준이 관련 법령* 간 상이하여 품질이 낮은 저가제품 사용 우려됨에 따라, 관계 법령에 맞추어 규격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

* (국토부)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25조의2: '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품'
↔ (고용부)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2조: 규격 제한 규정 없음

나. 개정 내용

- 타워크레인 고정부품의 규격기준(제142조)을 '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'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관계 법령 간 불일치 해소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고정부품의 규격을 관계 법령 간 통일하여 현장 내 혼동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5. 차량계 건설기계 낙하물 보호구조 설치대상 변경(안 제198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안전보건규칙」에서는 암석 등 낙하물 위험 지역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‘헤드가드’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」은 조종실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‘낙하물 보호구조’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
 - 두 법령에서 정의하는 ‘헤드가드’ 와 ‘낙하물 보호구조’의 설치목적은 동일하나 그 용어와 대상 기계가 상이하여 혼란 야기함에 따라, 이를 관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조종석 낙하물 위험 방지구조의 용어를 ‘헤드가드’에서 ‘낙하물 보호구조’로 변경하고, 설치대상 기계의 종류를 「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」과 통일*

* ▲용어: (현행) 헤드가드 → (개정) 낙하물 보호구조

▲설치대상 기계: (현행) 불도저, 트랙터, 쇼벨 로더, 파우더 쇼벨, 드래그 쇼벨

→ (개정) 불도저, 굴착기, 로더, 스크레이퍼, 덤프트럭, 모터그레이더, 롤러, 천공기, 향타 및 향발기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관련 법령과 기준 및 용어를 통일하여 현장 내 혼동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6. 굴착기 관련 안전규칙 정비(안 제207조 등)

가. 개정 이유

- 지난 5년간('16~'20년) 굴착기는 사망사고 1위(104/482명, 21.6%) 건설기계임에도 관련 안전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,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굴착기에 대하여 충돌방지조치 의무를 명확화하고, 안전띠 착용 및 방호장치 체결 의무를 부여하며,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*

* 굴착기 관련 관 및 조문 신설:

제2관 굴착기

- ①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설치·관리 의무 신설
- ② 좌석 안전띠 착용 및 퀵커플러 안전핀등 방호장치 체결의무 부여
- ③ 일부 장비에 인양작업을 허용하고, 작업시 안전기준을 명확히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차량계 건설기계 중 굴착기를 별도 조항을 분리하여 명확한 안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작업 이행을 통한 사망사고 감소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7. 향타기 및 향받기 사문화 규정 정비(안 제211조 등)

가. 개정 이유

- 기계산업 발전으로 향타·향받기 일부 기준이 사문화되고 일본식 용어 사용 및 불명확한 기준 등으로 산업 현장과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,
 - 향타·향받기 관련 안전규정을 현행화하고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향타·향받기 관련 안전규정을 현행화하고,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며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는 등 기준을 재정비하여 규정*

* 제3관 향타 및 향받기

- ① 안전규정 현행화: 버팀대 요건을 구조기준으로 전환, 버팀줄·평행추 내용 및 증기방식 삭제
- ② 불명확한 기준정비
 - 조립·해체 시 제조사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르도록 규정
 - 부품의 손상여부·부착상태, 강도기준 준수여부는 조립·해체 전 점검토록 규정
 - 클램프·샤클·크립 등 고정철물은 한국산업규격(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)에 따르도록 규정
- ③ 일본식 용어 순화: '각부, 가대' → '아웃트리거, 받침 등 지지구조물'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현실에 맞는 법령 정비와 용어 및 기준 명확화로 산업현장에서 규정 이해도 향상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8.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종류 명확화(안 제241조의2)

가. 개정 이유

- 화재감시자는 용접·용단작업시 배치되어 가연성물질 여부 확인 및 화재시 근로자 대피 유도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고 사업주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,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,
 - 지급되는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화재시 방연기능이 없는 일반마스크 등의 지급으로 화재시 대피 유도업무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화재감시자 본인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「산업표준화법」* 및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**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방연마스크를 지급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

*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(KS M 6766, 2021년 확인): 화재로부터 대피하기 위해 두건이 정착된 여과 장치(정화식 방연 마스크)

** 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인정기준(기준 제345호, 2020.11.02. 개정)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화재 시 일정시간 연기흡입 등의 방지 성능을 확보한 방연마스크를 지급하고 화재감시자의 직무수행 역량확보를 통해 화재 시 인명보호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9.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(안 제269조)

가. 개정 이유

- 인화성 액체 등을 저장하는 탱크의 외부화재 시 화염이 탱크 내부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,
 - '11. 7월 법령 개정* 시 통기밸브 설치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면제되도록 개정되었으나 '화염방지 기능이 있는' 문구가 삭제되어,
 - 단순 통기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도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인 바, 현행 규정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

* (개정 전) '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' → (개정 후) '통기밸브'

나. 개정 내용

-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의 상부에서 대기 방출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탱크의 외부화재 발생 시 화염이 탱크 내부로 전파되어 화재·폭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10. 관리대상 유해물질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(안 제449조 및 별표12)

가. 개정 이유

- 작업장 내 다양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노출기준만 설정되어 있고 국소배기장치 등 보건조치 의무가 없는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*로 지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

*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173종의 화학물질을 '관리대상 유해물질'로 지정하여 국소배기장치, 보호구 등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

나. 개정 내용

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[별표12]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생식독성물질 8종* 추가하고,

* ▲특별관리물질 7종: 디부틸프탈레이트, 산화붕소, 와파린, 벤조(a)피렌, 2-니트로톨루엔, 사붕소산 나트륨(무수물, 이수화물), 포름아미드

▲관리대상물질 1종: 시클로헥실아민

- 이 중, 생식독성 1A, 1B에 해당하는 위 7종은 특별관리물질*로도 지정

* 관리대상 유해물질로서의 국소배기장치, 보호구 등 조치의무 외에도 취급일지 작성, 유해성의 주지 등 의무 추가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이 추가되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생식보건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11. 여름철 폭염노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합리화(안 제566조)

가. 개정 이유

- 현행 규정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고열 작업* 을 하는 경우에만 휴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,

* 용광로, 용선로, 가열로 등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열환경에 노출되는 작업

- 동 규정의 취지는 고온 환경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하다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도,
- ‘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’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구조물의 내·외부에서 동일한 기온에 노출되면서 작업을 함에도 내부 작업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,
- ‘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함으로써 열사병 등 건강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’에는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조문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‘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함으로써 열사병 등 건강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’ 사업주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12.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공간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(안 제620조의2)

가. 개정 이유

- 현재 안전보건규칙에서 18개(별표18)의 밀폐공간을 정하고, 밀폐공간 관련 건강장해 예방 규정(제618조~제644조)을 적용하고 있는데,
 -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,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,
 - 질식 등의 위험이 없도록 환기장치를 설치·가동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면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급·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하는 경우, 밀폐공간 건강장해 예방 규정 일부*를 면제

* (제619조제2항)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 확인 의무를 규정

(제619조제3항)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자 정보, 산소농도 등 측정결과를 출입구에 게시토록 한 규정으로, 신설되는 제620조제3항으로 대체

(제620조) 밀폐공간 작업 시,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도록 한 규정

(제621조)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, 입·출입 인원을 점검하도록 한 규정

(제623조)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도록 한 규정

(제624조)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, 송기 마스크 등 지급, 착용하도록 한 규정

(제640조) 6개월 주기로 구조훈련을 실시토록 한 규정

- 단, 밀폐공간 중 부패나 발효 등 액체 등에 녹아있던 가스가 단시간에 방출되어 질식 위험이 있는 제10호, 제11호*는 제외하고, 설치된 환기 장치를 통한 적정공기 유지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, 기록·게시하도록 함

* [별표18]

제10호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·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

제11호 분뇨, 오염된 흙, 썩은 물, 폐수, 오수,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·침전조·집수조·탱크·암거·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밀폐공간 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일부 법 규정을 면제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 확보 유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13.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소화설비 규정 정비(안 제628조)

가. 개정 이유

- 현재 화재진화 목적의 이산화탄소(CO₂) 소화기와 소화설비를 설치, 사용과정에서의 CO₂ 방출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으로서 혼재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,
 - CO₂ 소화기와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CO₂ 소화기와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
 - 조문 제목을 다른 소화약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* 하고,
 - * (현행) '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' → (개정안) '이산화탄소 소화기에 대한 조치'
 -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'탄산가스'라는 명칭을 소방관계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'이산화탄소'로 변경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CO₂ 소화기와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의 구분 및 소방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일반적인 화학물질명의 사용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14.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사고 예방조치(안 제628조의2)

가. 개정 이유

- 최근(21. 10월)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CO₂ 소화설비 수동조작반 작동과 그에 따른 CO₂ 분출로 질식사고(사망 4, 부상 17)가 발생하는 등 CO₂ 소화설비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 - 현행 규정은 '소화기 등의 견고한 고정, 소화목적 외에 임의작동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'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므로, 질식·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개정 내용

- CO₂ 방출시 신속 인지 및 대피방안, 방호구역내 작업중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, 방호구역·소화용기실의 출입제한 및 작업관리와 출입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의무를 추가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CO₂ 소화설비에서의 CO₂ 방출에 의한 방호구역내의 근로자 질식·중독 사고 방지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15.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추가(안 별표6)

가. 개정 이유 및 내용

- 골재살포기, 쇄석기, 자갈채취기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상 건설기계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「안전보건규칙」 차량계 건설기계에 누락되어 있어,
 - 관계 법령에 맞추어 해당 규칙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자주식 골재살포기, 쇄석기, 자갈채취기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다. 입법효과

- 관련 법령 간 기준 통일로 현장 내 혼동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